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6. 11. 25
- 다. 상정일자 : 96. 12. 23(제50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자 : 보건소장 이대현

나. 제안사유

○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다.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화순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 협의회 기능(안 제2조)

-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이내

※ 단 의회의원 1명 포함.

○ 회의(안 제7조)

- 정기회의는 매년 1회
- 임시회는 수시 개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희)

- 동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건강에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위배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3조 (구성) 제3항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군의원 1명을 "군의원 3명으로 수정가결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끝.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기능 (안 제2조)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수립 시행 및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등

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안 제4조)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화순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회의개최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할 수 있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 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제4조 (의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계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화순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부총